

대전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0나12276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0나122763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0. 10. 14 선고 2020가단110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C

변론종결 2021. 10. 5.

판결선고 2021. 11. 2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. 10. 14. 선고 2020가단1100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와 2019. 7. 16. 접수 제577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. 12. 30.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,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“피고는”을 삭제하고, 같은 면 제11행의 “4,000만”을 “4,000만 원”으로, 같은 행의 “5,000만”을 “5,000만 원”으로 각 고치고, 제5면 아래에서 제6행의 “볼 때”를 삭제하고, 같은 면 아래에서 제4행의 “등에 비추어 볼 때”를 “등을 종합하여 보면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신순영, 판사 윤이진, 판사 안영화